



2011. 9. ~ 10.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 윤 인 성

대법원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들을 제외하고도 약 10건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중 침대회사들의 가격표시제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DRM 탑재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대형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8522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판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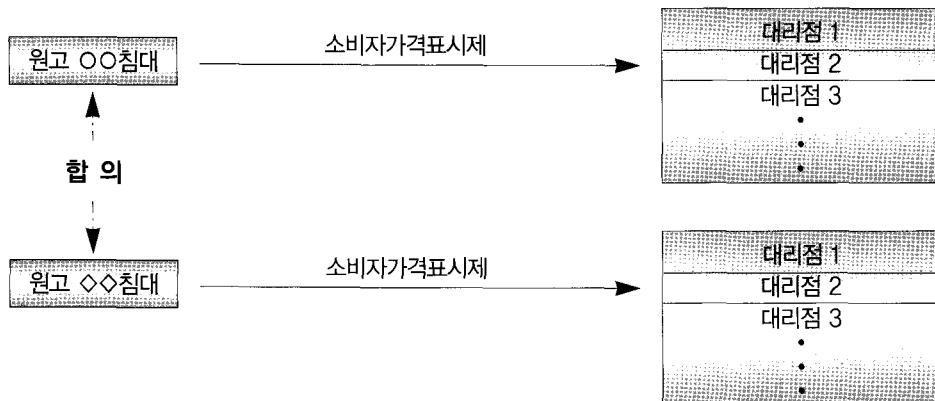
1

가격표시제에 관한 합의 관련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 사안 및 쟁점

- 원고들은 침대 제조사들로, 국내 시장점유율 1, 2위 사업자이다.
- 원고들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 원심은, 원고들이 합의한 가격표시제는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가격결정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비록 출고가 대비 소비자판매가격 책정기준을 다소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할인판매가 금지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구매하는 실제가격은 가격표시제 시행 전보다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쟁제한성도 긍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가격담합의 대상인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이 사건 가격표시제에 관한 공동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가 주로 문제되었다.

■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원고들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포섭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 이란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자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증대의 정도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관련 : 피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 사안 및 쟁점

-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 원고는 2004년 11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 별도로 음악사이트인 ○○을 운영하여 MP3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판매하면서, ○○사이트의 음악파일과 원고가 공급하는 MP3폰에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하여 원고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PC 또는 MP3 폰을 통하여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 파일만 재생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유료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원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별도의 컨버팅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였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¹⁾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2)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시장

1) 이하 사안 및 쟁점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 약칭한다.

지배적 사업자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는 해당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의 존재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의 존재 여부(상고이유 제3점), 시정명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4점) 등이 주로 다투어졌다.
-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인 DRM 탑재가 문제 되었고, 이에 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에서의 검토를 포함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었다.

■ 대법원의 판단

1. 제1, 2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02. 5. 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IV. 3. 라. (3)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축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불이익 강제행위를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 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 강제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행위가 그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 불이익 강제행위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

이 증명된 경우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 강제행위의 경위 및 동기, 불이익 강제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강제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MP3폰과 ○○사이트의 음악파일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원고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별도의 컨버팅(Convertting)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지만, 본래 DRM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파일의 무단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MP3폰과 음악파일에 DRM을 탑재한 것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자의 보호 및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비자가 원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사이트에서 컨버팅 과정을 거치거나 CD 굽기를 하여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지만,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사업자들에게 DRM을 표준화할 법적 의무가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불편은 부득이한 것으로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보다 낮은 가격에 통합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월 5,000원 정도를 내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곡을 스트리밍(Streaming)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 정액제 임대형 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지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일정한 정도로 나타났지만 DRM의 특성과 필요성 및 그 개발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음악파일의 상호 호환을 강제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원고의 DRM이 법령상의 ‘필수적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

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행위와 관련된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시기,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등을 살펴, 당해 행위로 인하여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당해 행위를 전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변동의 정도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비자가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이미 유료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경우에 원고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원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원고의 ○○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진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악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변경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그 침해의 현저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이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현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是很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행위가 현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여러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로, 음악파일의 상호 호환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원고에게 호환기술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정명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경영간섭행위 관련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8522 판결]

▣ 사안 및 쟁점

-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로서 ‘대규모소매업기준고시’ 제2조 제2항 등에 의한 대규모소매업자이다.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2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마목 소정의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였다.
 - (1) 원고가 2006년 5월경 자사와 경쟁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85개 납품업체 (122개 브랜드)로부터 납품업체가 경쟁백화점의 EDI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나아가 2008년 5월경까지 경쟁백화점의 EDI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일일 또는 주기적으로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취득한 행위
 - (2) 원고가 이와 같이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하고,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행위
- 원심은, 원고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이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자 자사 백화점 및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경영간섭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거래내용제한 관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는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졌다.

□ 대법원의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인 ‘경영간섭’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제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원고 운영의 ○○백화점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 운영의 △△ 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의 △△ 백화점에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85개 납품업체(122개 상표, 2006년 5월 기준)들로부터 △△ 백화점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같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아 평소 △△ 백화점의 EDI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기적으로 매출정보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한 후 ○○ 백화점 대비 △△ 백화점의 매출비중이 높거나 50% 이상(○○ 백화점에서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 백화점에서 실현하고 있는 경우)인 상표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매출대비율을 일

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납품업체로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백화점에서의 매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록 납품업체들이 원고에게 △△ 백화점의 EDI 시스템 접속권한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이상, 원고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이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 백화점 및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계 법령,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경영간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²⁾

2) 한편, 이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백화점들에 대해서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중 한 백화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영간섭행위의 성립이 부정된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론의 차이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의 증명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8478 판결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 12월경 원고 운영의 △△ 백화점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하고 있는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2개 납품업체(38개 브랜드)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도 2008년 2월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변경된 비밀번호를 취득한 사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정보 취득행위만으로 납품업체의 거래내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취득한 행위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에 규정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경영간섭’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